

#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 2015-1048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종 승

〈주문〉

한국일보 2015년 2월 10일자 1면 「이완구 총리후보 녹취록/공개파문 관련 본보 입장」 제목의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드러난 한국일보 기자 및 한국일보의 언론윤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일보가 위 날짜 1면에 적시한 ‘알려드립니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관련 발언을 담은 녹취록 공개파문과 관련해 경위와 본보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본보 기자를 포함, 일간지 기자 4명과 점심식사를 나누던 중 일부 언론사 간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지난 6일 KBS를 통해 공개됐고 야당에선 이 후보자의 언론 통제 및 개입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당시 본보 기자를 포함해 일부 기자들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녹음했습니다. 본보는 이 후보자의 왜곡된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사화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당시 그가 차남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비공식석상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해 보도를 보류했습니다.

통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은 의혹을 제기 하는 야당의원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정보나 소문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본보 기자는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 취재하던 중 이 후보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추궁을 준비하고 있던 김 의원실측에선 녹음 파일을 요구했으며, 본보 기자는 취재 윤리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파일을 제

공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실측은 이 파일을 KBS에 전달했고, 이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파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경위가 무엇이든, 취재내용이 담긴 파일을 통째로 상대방 정당에게 제공한 점은 취재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발언내용을 녹음한 것 또한 부적절했습니다. 다만 애초 이 후보자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 이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반대로 관련 내용을 야당에 전달한 것 역시 이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보는 이번 사태가 취재 윤리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본보 구성원 모두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중도가치를 지향하는 정론지로서의 본분을 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v/00238ee1765b43b299f6e803d485e275>)

## 2. 위 알림과 관련된 언론윤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위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이완구 총리후보 녹취록/공개파문 관련 본보 입장」을 신고, 이 총리후보자의 언론 관련 발언을 담은 녹취록의 입수와 유출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일보의 해당 기자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고, 이 파일 내용을 한국일보 지면에 보도가 되지 않은 채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쪽에 제공했으며 이것이 KBS로 넘어가 보도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심식사 당시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 4명의 일간지 기자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 후보자의 동의 없이 발언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이다.

대화의 한 당사자가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비밀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이날 일부 기자들의 녹취 행위는 대화의 당사자 혹은 참여자로서 한 것이고, 또한 국회 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가 요청하여 마련된 점심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실 보도’의 책임이 있는 기자로서 녹음을 하는 것은 기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일보 기자가 취득한 이 녹취파일이 한국일보의 보도에는 활용되지 않았고, 그 뒤에 야당 의원에게 유출되었고, 그 의원을 통해 KBS에 전달되어 보도되었고, 이 보도내용이 야권에서 이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일보는 위 ‘알려드립니다’에서 “이 후보자의 왜곡된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사화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당시 그가 차남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비공식석상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해 보도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의 기사화 여부 검토와 보도 보류 결정 과정이 한국일보의 설명 그대로였는지 혹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는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의 권한 밖이다.

한국일보는 결과적으로는 KBS를 통해 보도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단해 보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설사 그 판단이 오류이며, 진실을 추구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신문으로서 씻기 어려운 과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과 결정조차도 한국일보 편집국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논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남은 문제는 기자의 녹취파일 유출행위의 문제다. 이 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해당 기자가 자사 신문에 기사화되지 않자 청문회를 앞두고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치권에 제공했는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은 해당 기자의 의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논의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 14조(정보의 부당이용 금지)는 전문에서 『기자는 취재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설명대로 해당 기자가 자료를 전달한 행위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였을 뿐 이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일부를 구두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녹취파일 전체를 전달했다는 점은 취재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전달한 녹취파일을 해당 정치인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사용에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위 설명에서 “경위가 무엇이든, 취재내용이 담긴 파일을 통째로 상대방 정당에게 제공한 점은 취재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발언내용을 녹음한 것 또한 부적절했습니다.”고 인정했다. 또 “본보는 이번 사태가 취재 윤리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한 기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일보사 기자들의 취재, 취재자료 관리, 보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일보, 나아가 신문 전체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전문,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